



사람이 있는 문화

문화체육관광부

| | | | |
|----|----|----|-------|
| 신청 | 처장 | 지시 | |
| 접 | 일지 | 결과 | 당장 |
| 수 | 번호 | 공람 | 박/김/김 |
| 합 | 리과 | 공람 | |
| 담 | 당자 | 공람 | |
| 심 | 사자 | 심사 | 일 |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대학(교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부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,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3. 2018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우리 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협 조 사 항 >

- **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·교육 강화(각 학과장 등 전 교직원 대상 공문 공람)**
 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* 행위임을 안내
 - *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조)
 -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
 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- **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**
 - 우리 부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홈페이지 등에 게재
- **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**
 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
 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‘복스캔’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 -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
 - 교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불법복사 방지 홍보캠페인 진행시 협조

끝.

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자 전국대학(교)총장 귀하

주무관 전진덕 행정사무관 대결 2018. 8. 29. 저작권보호과 전결
이동혁 장

협조자

시행 저작권보호과-3964 (2018. 8. 29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203호 문화 / http://www.mcst.go.kr
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

전화번호 044-203-2490 팩스번호 044-203-3466 / jjdsky99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